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

2024. 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7월 24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9.9.) 상정, 제안설명, 대
체토론,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

내로 정하고, 그 협의·검토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40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허가 등을 처리하거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위원회는 종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의 심의 등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으로 인하여 하나의 법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제7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전문위원회의 모체가 되는 상위위원회(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다르나, ‘전문위원회’라는 명칭이 동일하여 행정적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위원회’라는 명칭을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라고 보더라도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또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라고 지칭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혼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의 전문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둘째, 개정안 제37조제4항제2호 및 제38조의2제7항제2호에서는

동일·유사 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 10조의2제3항제1호에서도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도 아울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규정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봄.
- 다만,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법 문언이 다소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위임입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정보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붙임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안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10조의2제3항 등).

적극행정의 행위에 대응되는 주어를 명기함(안 제40조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정보통신융합등”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정보통신융합등”으로, “사항의 심의”를 “사항의 심의·의결”로 한다.

안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3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40조의2 중 “제36조,”를 “신기술·서비스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제36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당시”를 “전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생략)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③ ----- ----- ----- ----- ----- -----. 1. ----- ----- ----- ----- ----- ----- ----- ----- ----- -----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

	<u>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u>	<u>는 경우의 정보통신융합등</u> ----- ----- ----- ----- ----- <u>사항</u> <u>의 심의·의결</u>
	<u>2. 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전의 적격성 판단</u>	2. ~ 4. (개정안과 같음)
	<u>3.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u>	
	<u>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u>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u> -----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생략)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음)

④ -----

-----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1. · 2. (개정안과 같

음)

	<u>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u>	
<u>④</u> · <u>⑤</u> (생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⑤</u> ~ <u>⑬</u> (개정안과 같음)
<u>⑥</u> 관계기관의 장은 <u>제5항</u> 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u>제5항</u> 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	<u>⑦</u> ----- ---- <u>제6항</u> ----- ----- ----- ----- ----- ----- ----- <u>제6항</u> ----- ----- ----- ----- ----- ----- -----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 요로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 ----- ----- ----- -----.
⑦·⑧ (생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임시허가를 받 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을 이행하기 위하 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 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다.	⑩----- -----제9항-- ----- ----- ----- -----. ----- ----- ----- ----- ----- ----- -----.
⑩ ~ ⑫ (생략)	⑪ ~ ⑬ (현행 제1 0항부터 제12항까 지와 같음)

	<u>계기관의 장의</u> <u>검토결과 회신기</u> <u>간: 15일 이내로</u> <u>단축</u>	음)
	2. <u>제3항 및 제6항</u> <u>에 따른 심의위</u> <u>원회에 상정 및</u> <u>심의위원회의 심</u> <u>의·의결: 전문위</u> <u>원회에 상정 및</u> <u>전문위원회의 심</u> <u>의·의결</u>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⑨ (개정안과 같 음)
⑧ <u>제1항부터 제7</u> <u>항까지에서</u>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⑨ <u>제1항부터 제8</u> <u>항까지</u> ----- ----- ----- ----- ----- ----- ----- 제40조의2(적극 행정 면책 특례) <u>제36조,</u> <u>제36조의2, 제37조,</u> <u>제38조의2, 제38조</u>	제40조의2(적극 행정 면책 특례) <u>신기</u> <u>술·서비스위원회</u> <u>위원, 과학기술정</u>

	<u>관한 적용례) 제3</u> <u>7조제4항 및 제3</u> <u>8조의2제7항의</u> <u>개정규정은 이</u> <u>법 시행 당시 제</u> <u>37조제1항 또는</u> <u>제38조의2제1항</u> <u>에 따라 임시허</u> <u>가 또는 실증을</u> <u>위한 규제특례를</u> <u>신청한 경우에도</u> <u>적용한다.</u>	관한 적용례) --- ----- ----- ----- -----<u>전에</u>----- ----- ----- ----- ----- ----- -----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심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
3.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37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 완료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37조제7항”을 “제3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12항”을 “제37조제13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제38조의3제6항 중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제37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장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3호 중 “제38조의2제8항”을 “제38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

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제9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37조제9항”을 “제37조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생략)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심의위원회 상정 전 안전의 적격성 판단 3.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

③ <u>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u>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생 략) <u><신 설></u>	<u>의 검토·조정·처리</u> 4. 그 밖에 <u>심의위원회 업무의</u> <u>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u> <u>여 필요한 사항</u> ④ <u>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u> <u>의-----</u> <u>-----.</u> 제37조(임시허가)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u> <u>중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u> <u>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임시</u> <u>허가를 받거나 제38조의2제3항</u> <u>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u> <u>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u> <u>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u> <u>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u> <u>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u> <u>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u> <u>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u> <u>있다.</u>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u>과의 협의기간: 15일 이내에</u> <u>완료</u>
---	--

④· ⑤ (생략)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⑧ (생략)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

2.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 의결

⑤·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6항--

-----제6항-----

⑧·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⑩ -----제9
항-----

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⑩ ~ ⑫ (생략)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생략)

② · ③ (생략)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생략)

--.

⑪ ~ ⑬ (현행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제37조제8항-----

4. 제37조제13항-----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중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
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
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
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
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
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
의·의결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관리·감독) ① ~ ⑤ (생
략)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
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8항 및 제9
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장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관리·감독)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_____

-----제37조제9항 및 제10
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

— •

1.2. (생 략)

3.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
는 경우

4.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1.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의2제9항-----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
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
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
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
니한다.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는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